[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2.11.21.> (앞 쪽)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는 해당되는 란에 V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거소			
④중 개 업 자 종 별		□법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⑤명 칭		⑥전화번호	
	⑦소 재 지	(전화 :)		
⑧겸 업 업 종				
⑨공 인 중 개 사		명 ※ 명단은 뒷쪽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1부 2. 법인의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부동산중개업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의 이수확인증 사본 1부 4. 반명함판(3cm×4cm) 사진 5.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6. 다음 각목의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가.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 나. 상법 제614조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군·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부동산중개담당부서 ( )
		수 수 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

210㎜×297㎜

(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공 인 중 개 사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거소	자격증번호 (공인중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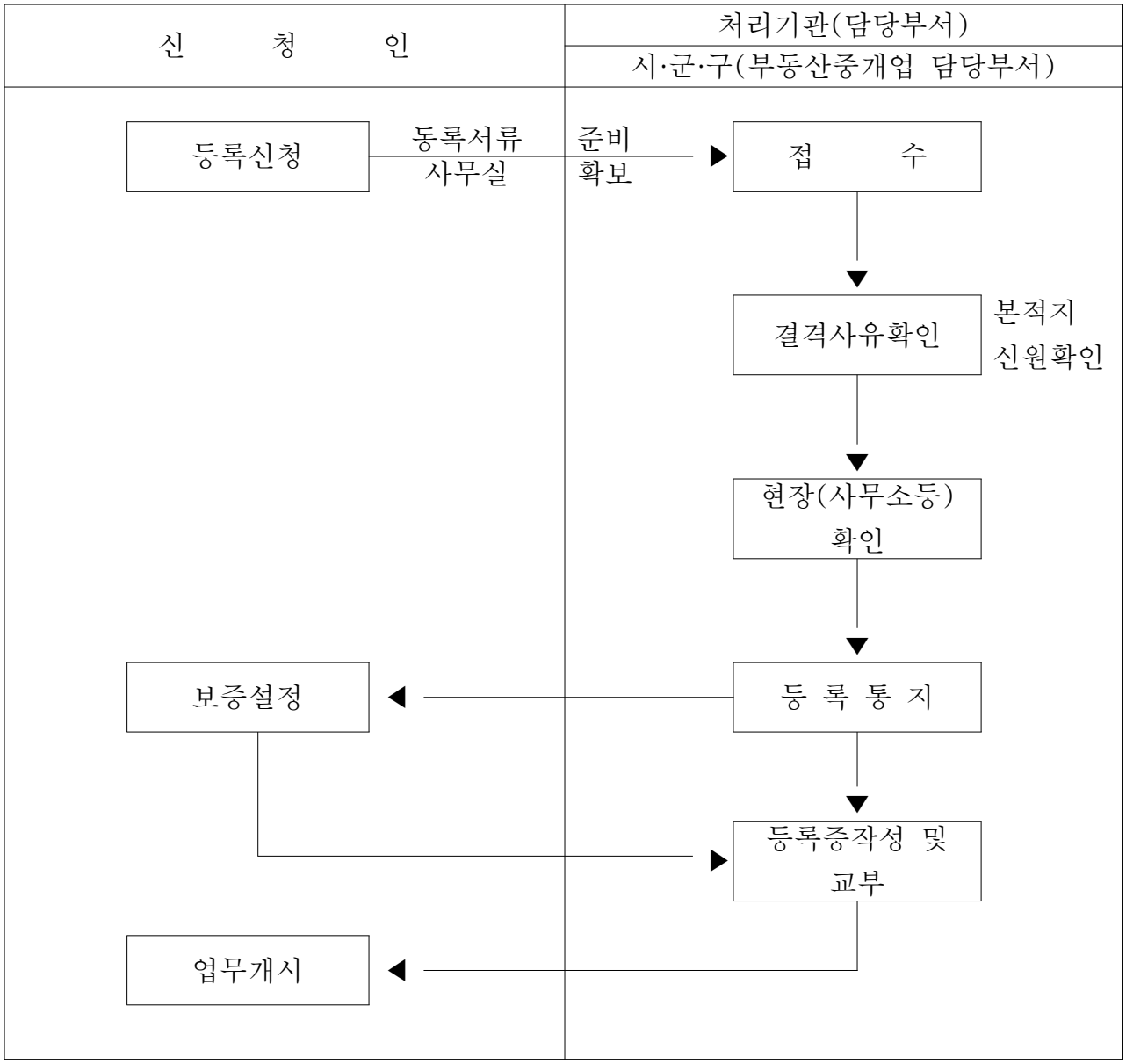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